

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

- 창업·운영·폐업 전 과정에서
점주 권익이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 -

2025. 9.

공정거래위원회

< 목 차 >

- I. 추진 배경 1
- II. 기본 방향 2
- III. 창업 단계: 창업 안정성 강화 3
 - 1.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3
 - 2. 정보공개서 체계·내용 개편 5
 - 3.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7
 - 4. 기타: 숙고기간 제도 합리화 7
- IV. 운영 단계: 점주의 협상력 및 법 집행 강화 8
 - 1.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8
 - 2.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9
 - 3.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 11
- V. 폐업(계약갱신) 단계: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12
 - 1.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12
 - 2. 중도 폐업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 13
 - 3.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 보완 13
 - 4.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 확대 14
- VI. 향후 추진 계획 15

I 추진 배경

- 가맹 산업의 꾸준한 성장*에도 불구하고 본부-점주 간 힘의 불균형,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권익 침해 사례 빈발
 - * 가맹본부 수(개): ('13)2,973 → ('24)8,976 ▲가맹점 수(개): ('13)190,730 → ('23)365,014
- '24년 실태조사 결과, 조사 대상 가맹점주의 과반 이상(54.9%)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* 응답 → 본부-점주 간 분쟁도 지속 증가** 추세
 - *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: ▲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(20.5%), ▲광고비 등 부담 전가(18.0%), ▲정보공개서 등 중요서면 미제공·지연제공(12.1%) 순
 - ** 가맹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(건): ('22)691 → ('24)758
- 한편, 가맹점 경영여건 악화*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 권익 저하가 가속화되는 악순환
 - * 소매판매액 지수(통계청): ('22)105.5 → ('23)104.1 → ('24)101.9
- ① 가맹점주 수익성 저하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폐점률 상승**
 - * 외식 자영업자 영업이익률(%), 한국농촌경제연구원: ('20)15.0 → ('22)11.2 → ('24)8.9
 - ** 외식업 가맹점 폐점률(%): ('21)12.6 → ('22)14.5 → ('23)14.9
- 과도한 폐업 위약금 등 문제로 폐업 관련 분쟁이 증가*하고, 적자에도 불구하고 '울며 겨자먹기'식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사례도 존재
 - * 가맹점 폐업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건수(건): ('22)135 → ('24)208
- ② 2차 베이비부머 세대('64~'74년생, 954만명) 은퇴 본격화로 가맹점 창업 지속 증가* → 가맹점 과밀화로 경영여건 악화 및 폐업 위험 가중
 - * 가맹점 수(개): ('21)335,298 → ('22)352,866 → ('23)365,014
- 또한 가맹점 창업시 ▲창업 정보 취득의 어려움, ▲부실 브랜드의 가맹점 모집 등으로 인해 안정적 창업이 어려운 이종고 존재

◆ 본부-점주 간 힘의 불균형·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획기적 시정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마련 필요

■ 가맹점 창업·운영·폐업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쳐 점주 권익 저해 요소를 시정

II 기본 방향

창업·운영·폐업 등 전 과정에서 본부-점주 간 힘의 불균형·정보비대칭 시정 및 점주 경영여건 개선

가맹점주 권익 강화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



III 창업 단계: 창업 안정성 강화

1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[법·시행령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(제도 현황)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는 **등록기관**(사도, 공정거래조정원)이 **심사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**하는 방식(사전심사제)으로 운영중
- (문제점) 등록기관의 심사지연 등의 이유로 **가맹희망자에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**(정보의 적시성이 낮음)
 - (심사 지연) 가맹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심사 건수 대폭 증가* → 한정된 심사 인력으로 **신속한 심사 곤란****
 - * 연간 심사 건수(건) (20)12047 → (24)21,182 ** 정보공개서 건당 심사기간(일) : (20)55.4 → (23)86.8
 - 아울러, 정보공개서 심사 요청이 **특정 시기**(4월말, 6월말)에 집중 접수*되어 정보공개서 심사 지연 문제 가중
 - * 전체 정보공개서 접수 건수 중 4월 접수 건수는 54.5%, 6월 건수는 9.0%(24년)
 - * 매년 4월말(개인사업자는 6월말)까지 재무현황 등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
- (구조적 한계) 재무 현황, 가맹점 수 등 정보공개서상 **주요 정보가 1년 주기로 변경**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**최신 정보 제공에 한계**

나. 개선 방안

- ① (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) 사전심사 없이 **가맹본부 책임** 하에 정보를 적시에 제공
 - ※ (現) 등록기관 심사 후 정보공개서 제공 → (改) 심사 없이 정보공개서 신속 공시(사후점검)
- (적용 범위) 규모와 관계 없이 **모든 가맹본부에 공시제**를 적용하되,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시에는 **현행 등록제**(사전심사) 유지(변경등록부터 공시제)

③ (가맹거래사 역할·책임 강화) 가맹거래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시제 도입으로 인한 공백 보완 → 가맹거래사 역할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

- i) (공시 확인제) 정보공개서 공시 내용에 대해 **가맹거래사 확인**을 거치도록 하는 **‘공시 확인제’**를 도입하여 **허위 공시 방지** 유도

<참고> 공시 확인제 도입(안)

- 공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친 경우, 정보공개서에 **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쳤다는 사실과 함께** 담당 가맹거래사 등의 정보(이름, 등록번호 등)를 기재
- 고의 과실로 공시 내용을 잘못 확인한 가맹거래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**제재(자격정지 등) 부과**
- 다만, 가맹본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**자율제 형태**로 도입

- ii) (고유 업역 명시) 「가맹사업법」에 **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**가 타 지역의 수행이 불가능한 **고유 업역***임을 명시 → 위반 시 **제재 규정 신설****

- * 현재도 법상 가맹거래사 업무 범위는 고유 업역으로 해석(법제처)되고 있으나, 규정이 모호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 업역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
- ** 유사 국가전문자격인 법무사·세무사·공인중개사 등도 독점적 업무 범위 침해시 형벌로 제재

- iii) (책임 및 전문성 강화) 제재 규정을 **재정비***하여 가맹거래사의 **책임성**을 강화하고, **정기적 교육 이수 의무**(위반시 과태료)를 부여해 **전문성** 강화

- * (現) 가맹거래사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등록취소만 가능해 제재가 사실상 사문화 → (改) 제재 수단으로서의 일정기간 자격정지 근거도 신설해 제재조항의 실효성 확보

2 정보공개서 체계·내용 개편 [시행령·고시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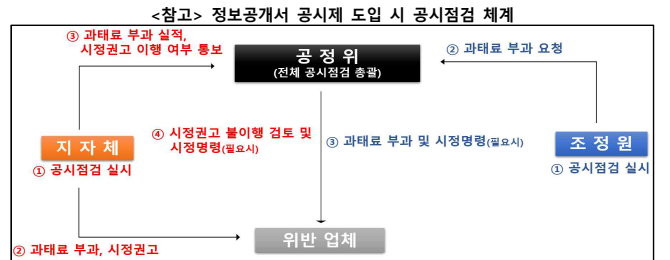
- 현행 정보공개서는 이슈 발생시마다 항목을 산발적으로 추가하는 **덧붙이기식 개편**으로 **목차와 세부 내용 간 정합성·가독성**이 낮아 **핵심정보 파악이 곤란**
- 또한 **창업 의사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***들이 많은 반면, **새로운 영업환경 반영 정보**(예: 배달플랫폼 등)는 **없어 실효성**이 낮다는 지적
 - * ▲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, ▲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정보 등

- (모든 가맹본부에 적용) 공시제 도입 **부작용**(공시오류허위공시) **최소화**를 위해 **대규모** 가맹본부에만 **공시제**를 적용하는 방안은 **▲중소** 가맹본부에 **위법행위**가 집중되고 있고, **▲이들의 정보도 신속히 제공**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**부적절**
- (신규등록시) 신규 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작성 **오류**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**사전 심사 필요성 상당** → **현행 등록제 유지**

- (공시 주기) **현행** (연 1회 분기 1회) 수사를 유지하되, 집계가 손쉽고 브랜드 선택에 **중요한 항목**(예:가맹점 수 등)은 **변경 주기를 단축**(연 1회→분기 1회)
 - ※ 공시 주기는 시행령 및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 고시 개정으로 반영

- ② (사후점검) 공시제 도입으로 **악의적 허위 공시** 및 공시 **오류**로 인한 점주 **피해** 우려 → **피해 최소화**를 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

- ① (상시 공시점검) 現 정보공개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**지자체**(서울·인천·경기·부산)·**조정원**이 허위공시 여부 **상시·전수점검** 실시
 - 공시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위해 **지자체에 과태료 및 시정권고권** 부여
 - **공정위는** 전체 공시점검 체계를 **총괄·감독**하는 역할을 담당



- ② (허위공시 제재 강화) 공시 위반 적발시 **과태료 상한을 높게 설정*** 하여 **고의적 허위공시 엄중 제재**
 - * (現) 정보공개서 허위 변경등록 또는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
- 단, **단순 공시 오류**에 대해서는 **과태료 감경 규정** 활용 등을 통해 **과태료 부과액의 구체적 타당성** 도모

나. 개선 방안

- ① (체계 개편) 정보공개서 목차를 가맹점의 **생애주기 순**(개점-운영-폐점)으로 **개편**하여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의 **직관적 이해**를 돕고 **가독성**을 제고

- (요약본 신설) **창업 여부 및 브랜드 선택**에 영향을 미치는 **핵심 정보**를 정리한 **요약본***을 **신설**하여 **가맹희망자의 용이한 브랜드 비교** 지원
 - * ▲기맹본부 일반정보, ▲재무현황 ▲가맹점 수 추이 ▲가맹점 연평균 매출액 ▲필수품목 현황 등 포함

- ② (내용 개편) ▲**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** 추가, ▲**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 병합·삭제**를 통해 정보공개서 **실효성** 확보

- (항목 추가) 가맹점 **영업환경 변화**를 반영한 정보, **가맹본부의 브랜드 신뢰도**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등을 **추가**

<참고> 정보공개서 추가 항목사유(안)

추가 항목	추가 사유
① 가맹점주의 비용 결제 정보 * 카드 사용 가능 여부, 분할(의상) 결제 가능여부	• 장기적 반복적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
② 사모펀드(PEF) 소유 가맹본부 정보 * PEF 운용사 명칭, 보유지분율,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	• 사모펀드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비용 전가 우려 존재
③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에 관한 정보 * 장기운영 가맹점 수(비율), 가맹점 생존율,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	• 가맹희망자의 가맹점 창업 결정 시 장기 생존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 요소
④ 제휴계약(배달앱, 모바일상품권 등) 세부 내역 * 계약기간, 비용, 제휴조건	•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자금 제약에 직면하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
⑤ 해외 진출 정보 * 해외 진출 국가·직영점·가맹점수, 최초진출연도, 진출 도시	•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브랜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가맹본부에게 해외 진출 동기 부여
⑥ 평균 영업이익금 정보 *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이익금 부담액	• 가맹희망자가 위약금 수준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여

- (항목 삭제)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항목은 **병합·삭제**해 **용이한 정보취득** 및 정보공개서 **유용성** 제고

- * ▲인수합병 내역, ▲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, ▲그 밖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등

3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[법·시행령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**현행** 1+1제도는 신규 등록시에만 적용 →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업종 변경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탈법행위 발생
 - * 가맹 개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(1개 이상)을 1년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
- 아울러, 1+1 제도 시행 직전 대규모로 등록된 정보공개서 상당수가 가맹사업 개시 없이 등록 상태를 유지* → 정보공개서 매대를 통한 탈법행위에 활용
 - * 등록된 정보공개서: 7,094개(20년) → 11,218개(21년)(58.1% 증가),
 - ** '24년 기준 등록된 영업표지(12,377개)의 35.0%(4,330개)가 가맹점 수 0개

나. 개선 방안

- **(1+1 확대)** 업종 변경은 공시 사항이 아닌 등록 사항으로 정하고, 변경할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등록 거부 사유로 규정
 - 아울러,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브랜드는 정보공개서 양수도도 차단* 하고, 일정기간(예: 2년) 경과시 직권 등록취소
 - * 사업자 명의 변경도 업종변경과 마찬가지로 공시 사항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록 사항으로 정하고, *가맹점 수가 0개인 영업 표지의 사업자 명의 변경은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

4 기타: 속고기간 제도 합리화 [법 개정]

- **(현황 및 문제점)** 현행 「가맹사업법」은 점주가 계약 체결 전 14일의 속고기간을 갖도록 하되, 전문가(변호사가맹거래사) 자문시에는 속고기간을 7일로 단축*
 - *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(들)-제공한 날부터 14일(7명 이하)까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도 이하로 낮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회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§73).
- 법 문언상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(가맹본부 소속 등)의 자문시에도 속고기간이 단축되어 제도의 취지 잠탈 우려
- **(개선방향)** ①가맹본부와 고용관계, ②가맹본부의 임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·변호사의 자문시에만 속고기간 단축

IV 운영 단계: 점주의 협상력 및 법 집행 강화

1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[법·시행령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**(제도 현황)** 현행 「가맹사업법」은 가맹점주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 협의 요청권을 인정
 - 다만, 단체의 구성 요건이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미규정

<참고> 단체구성권·협의요청권 관련 규정

- (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)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(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)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·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- **(문제점)** 점주단체 구성요건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→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결여*를 이유로 한 협의 거부 사례 빈발
 - * 점주 대상 서면실태조사(2024) 결과, 협의 거부를 경험한 대다수의 점주들이 ①거절사유 불명확(41.5%), ②단체의 대표성 부족(31.0%)을 협의 거절 사유로 응답
- 실제 가맹본부는 대표성 확인을 위해 점주단체 명부 열람을 요구하기도 하나, 점주단체는 개별 점주에 대한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명부 열람을 거부

나. 개선 방안

-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(점주단체 등록제 도입)
 - ※ 현재 민병덕의원안을 포함한 7개 관련 「가맹사업법」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

나. 개선 방안

- ①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대한 제재(시정명령) 근거 신설 → 점주단체에 부여된 협의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
 - * 공평협의명령 → (불응시) 공평고발 → (형벌) 3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
 - ※ 현재 민병덕의원안 등 관련 「가맹사업법」 개정안(6개)이 국회 계류 중
- ② 단, 협의 의무화는 ▲가맹본부 부담 가중, ▲본부-단체간 및 복수 단체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 → 부작용 완화 장치도 별도 마련
 - ① (협의요청권 제한)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 제한(예: 분기 1회) 등 규정
 - ② (협의 거부사유 마련) 본부의 협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*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
 - * ▲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재차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, ▲협의 요청사항이 현행 「가맹사업법」상 점주단체 금지행위(§14의2④)와 관련된 경우 등
- ③ (일괄 협의절차) 동일 안전에 대해 복수단체와 각각 협상할 필요가 없도록 일괄 협의절차 규정 → 반복적 협의에 따른 협의 부담 완화

- (협의참여 요구) 가맹본부가 특정 점주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, 타 점주단체에 그 협의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
- (협의 간주) 협의참여를 요구받은 점주단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, 협의대상 주체에 대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

2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[법·시행령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**(제도 현황)** 현행 「가맹사업법」은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*를 가맹본부에 부과하고 있으나, 협의 거부*에 대한 제재규정은 부재
 - * 제14조의2(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등) 제3항: 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.
- **(문제점)** 제재규정 부재로 본부가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, 이에 따라 점주단체에 보장되고 있는 협의요청권이 유명무실화되는 문제

3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(문제점) 장기간 지속되는 **자영업 경기침체** 등으로 가맹점주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저하* 및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도 증가**
 - *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.6%로 전년(76.9%) 대비 5.3%p 하락(*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, 공정위)
 - **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54.9%로 전년(38.8%) 대비 16.1%p 증가(*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, 공정위)
- ▲광고비 등의 비용을 **부당하게** 점주에게 전가하거나 ▲**불필요한 필수품목**을 지정*하는 등 **가맹점주의 권익 보호**가 실질적으로 **보장되지 못하는 실정**
 - *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55.2%로, 주요 문제점은 비싼 가격(36.9%), 불필요한 품목지정(13.2%), 품질저하(3.8%)로 선정

나. 개선 방안

- 1 거래 현장에서 점주의 애로를 유발하는 **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* 집중 점검**
 - * ▲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, ▲본사의 부당한 비용 전가, ▲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
 -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**범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**
- 2 지난 해 진행한 **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***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바람직한 거래 관행의 **조기 정착을 유도**
 - * ▲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(*24.7월), ▲거래 조건 변경시 협의의무화(*24.12월), 등

V 폐업계약 갱신 단계: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

1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[법·시행령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(제도 현황) 「상법」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**부득이한 사정**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**통지 후** 계약을 **해지**할 수 있다고 규정*
 - *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(*16의10).
 - 「가맹사업법」에는 가맹본부의 **계약 해지 남용을 제한**하기 위한 **규정만 존재*** → **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** 위한 조항은 **부재**
 - *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전 통지(2회), 시정기회 부여(2개월 이상)를 의무화하고, 예외적인 경우(가맹점주 파산, 영업정지처분 등)에 한하여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규정(*14조)
- (문제점) 「상법」 조항은 **실효성에 한계** → 점주의 계약해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
 - ‘부득이한 사정’, ‘상당한 기간’ 등 의미가 **모호**하고, 해당 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시 **손해배상의무 면책여부 불분명** → **활용 가능성이 낮고 분쟁 소지도 큼**
 - * 해지 가능 여부, 손해배상의무 존부 등은 소송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

나. 개선 방안

- 「상법」 규정을 **구체화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**을 「가맹사업법」에 명시하여 **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** 보장
 - 다만, 계약해지권 보장 사유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**엄격히 제한**해 가맹본부의 사업 안정성 확보
 - 아울러, 법에서 정한 **사유에 해당**되어 계약을 해지함에도 불구하고 **위약금을 부과**하는 행위를 **제한***하여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
 - * (예) 적절한 계약 해지임에도 위약금 부과·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(*12조)로 규율위반시 과징금 등
- ※ 계약해지 사유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연구용역 및 업계·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

2 중도 폐업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 [시행령·고시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(제도 현황) 위약금 정보(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)는 가맹계약서·정보공개서 **필수 기재사항**으로 규정(가맹사업법 §11②, 시행령 [별표1])
- (문제점) 통상 가맹계약서·정보공개서에는 **복잡한 위약금 산식** 기재 →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위약금에 대한 **명확한 이해 없이 계약 체결**

나. 개선 방안

- 정보공개서에 ‘계약을 **중도해지**한 가맹점의 잔여 계약기간별 **평균 영업 위약금 부담액*** 항목을 추가
 - *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를 기재하며, ‘해당기간 동안 중도해지된 가맹점들이 부담한 영업위약금 액수의 총합/중도해지된 가맹점 개수’로 산출
 - **가맹희망자가 계약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 수준**을 쉽고 **명확하게 인식**할 수 있도록 개선 → **본부-점주 간 분쟁 소지 사전 차단**

3 목시적 계약갱신 절차 보완 [법·시행령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(제도 현황) 현행 「가맹사업법」(제13조 ④)은 가맹본부가 **계약만료 90일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** 또는 **계약 미갱신 의사**를 표시하지 않으면 **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**을 하는 것으로 간주(목시적 계약 갱신)
 - 단, 가맹점주가 목시적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**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갱신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**
- (문제점) 동 조항은 **가맹점주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**를 위한 규정이나, **계약갱신 의사가 없는 점주**의 계약도 의도치 않게 갱신되는 경우도 발생
 - 즉,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**점주가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고** 점주 스스로 **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**으로 계약 갱신

나. 개선 방안

- 계약 갱신 **통지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** → 가맹점주의 의도치 않은 계약 연장 방지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
 - **가맹본부의 통지 의무 미이행시 점주**는 일정기간(예: 180일) 내에 **▲새로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**할 수 있는 **권리 보유** 및 ▲**가맹본부에 미갱신 통보 가능**
 - ※ 구체적인 안은 연구용역 및 업계·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

4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 확대 [법 개정]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현행 **정보공개서 제공 의무** 대상자는 **최초**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**가맹희망자로 한정***
 - *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(중략)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(*7조)
- (문제점) 기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**갱신 여부 결정**을 위해 **최신**의 정보를 **확인**하고자 해도 정보공개서 **열람이 곤란**

나. 개선 방안

- (제공 대상 확대) 계약 갱신을 앞둔 **가맹점주의 요청***시 정보공개서(비공개 항목이 포함된 원본)를 **열람**할 수 있도록 **의무화** → 점주의 계약 갱신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
 - *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(가맹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)에 가맹점주에게 열람 요청 기회를 부여
 - ※ (現) 가맹본부는 등록심사가 완료된 정보공개서(개인정보영양·밀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원본)를 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, 일부 항목이 비공개 처리된 정보공개서는 일반 국민도 열람 가능

VI 향후 추진 계획

구분	과 제	개정 대상	일 정
창업	①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	법률 시행령	'25년 下 ~'27년 上
	② 정보공개서 내용·체계 개편	시행령 고시	'25년 下 ~'26년 上
	③ 지역점 운영의무 확대	법률 시행령	'25년 下 ~'26년 下
	④ 숙고기간 제도 합리화	법률	'25년 下 ~'26년 上
운영	①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 도입	법률 시행령	'25년 下 ~'26년 下
	② 가맹점주단체 협의 의무제 도입		
	③ 공정위 법 집행 강화	-	상시
폐업	①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 보장	법률 시행령	'25년 下 ~'27년 上
	② 중도 폐업 위약금 정보 제공 내실화	시행령 고시	'25년 下 ~'26년 上
	③ 목시적 계약갱신 절차 보완	법률 시행령	'25년 下 ~'27년 上
	④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 확대	법률	'25년 下 ~'26년 上